

기본연구2012-19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정영태

# 발 간 사

성인지예산제도는 1995년 북경세계 여성대회를 통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되어 90여개국에서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 중앙부처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도 예산서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정부 예산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배분구조가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배분구조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성평등을 포함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구조를 성평등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이용 가능한 재정을 성평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은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는 원년입니다. 올해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향후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착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양 영 오

## 연구요약

### I. 서론

-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재정운용은 성불평등한 요소를 지속시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맥락에서 2006년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음
- 2009년 지방재정법을 전격 개정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까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었으며, 2013회계 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전국적으로 2012년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행정안전부, 2012)
- 행정안전부(2012)는 성인지예산제도 실행을 준비하면서 2012년 2월까지 사전준비 작업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6월에 걸쳐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범교육과 시범작성 실시, 7~8월에 기준에 대한 협의 조정을 거쳐 9월 성인지예산서를 본격 작성하도록 하였음
- 본 연구는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단계에서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함
  -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에 따른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시행방향에 있어 성인지예산서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이면서 적용가능 하도록 매뉴얼을 구성하고자 하였음

## II. 성인지예산 개념

-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제도는 정책수행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예산과정에 성 인지(gender awareness) 및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정자원의 남녀차별적 배분효과를 시정하여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종합해보면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
- 성인지 예산제도의 기능은 제도를 통해 정부는 예산활동의 성별영향분석결과를 알 수 있으며, 향후 예산의 불평등한 성별 차이를 시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산집행과 관련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특정 정책 및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긍정, 부정, 중립) 또는 특정 신규 예산사업이 기존의 성별 수혜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증가, 감소, 불변 등)를 분석 점검
- 성인지예산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선진국의 경우 예산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책집행수단, 동원자원, 성과지표 등 모든 부문에 양성평등의 인식과 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III.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적용

-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은 1995년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예산 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2001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엔여성기금(UNIFEM)회의에서 EU와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성인지예산을 실행하기로 합의한 데서 출발하였음

- 우리나라는 1998년 여성단체 중심으로 여성 관련 예산을 분석하는 운동에서 정부와 정당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공론화가 되었음
  - 2002년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여성 관련 자료 제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동년 11월 본회 의결, 2003년 기획예산처는 “보육예산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예산안 편성지침 포함, 2005년에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고려 예산 편성 요구
  -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는 성인지예산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팀 구성을 통해 2006년 국가재정법제정 시 성인지예산제도를 근거 마련
-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를 개정(2006.10.4)하여 2010회계 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 개정('11.3.8)을 통하여 2013회계 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IV. 성인지예산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와 더불어 추진 일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과제를 통합 성별격차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의 재분배를 통한 정책 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b>I. 서 론</b> .....	<b>1</b>
1. 연구목적 .....	1
2. 연구내용 .....	3
3. 연구방법 .....	4
4. 기대와 한계 .....	4
<b>II. 성인지예산 개념</b> .....	<b>6</b>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	6
2.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특징 .....	10
3.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 .....	13
4.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	15
<b>III.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성인지예산서</b> .....	<b>16</b>
1.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발전 .....	16
2. 지방자치단체와 성인지예산제도 .....	26
3. 제주특별자치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	35
<b>IV.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b> .....	<b>39</b>
1. 성인지예산서 추진체계 .....	39
2.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	40
3. 예산부서의 성인지예산서 .....	46
4. 실·국의 성인지예산서 .....	54
5. 실·과의 성인지예산서(사업총괄표) .....	57

6. 실·과의 사업별 성인지예산서(사업별 설명자료) .....	61
V. 성인지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77
참고문헌 .....	80
Abstract .....	82

# 표 목 차

<표 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국가 현황 .....	8
<표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	12
<표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발전과정 .....	18
<표 4>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	20
<표 5>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및 현황(2010~2012) .....	23
<표 6> 성인지예산서 선정기준별 작성현황(2010~2012) .....	24
<표 7>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09~2011) .....	25
<표 8>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	34
<표 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2006년~2011년) .....	36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BRM분석(2005~2011) .....	37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현황 .....	40
<표 12> 2013년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개요 .....	40
<표 13> 2013년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	41
<표 14> 성인지예산서 제출 조직비교(2012~2013) .....	43
<표 15>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비교(2012~2013) .....	44
<표 16> 성평등목표 비교 (2012~2013) .....	45
<표 17>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비교(2012~2013) .....	45

## 그림 목 차

<그림 1> 기존 예산과 성인지예산의 개념적 관계 .....	8
<그림 2>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 및 구조 .....	11
<그림 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절차 .....	28
<그림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편성시기 및 심의 .....	30
<그림 5>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 심의 의결 흐름도 .....	32
<그림 6>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	33
<그림 7>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추진체계 .....	39

## 사 진 목 차

<사진 1> 지하철 손잡이 .....	14
----------------------	----

# I. 서론

## 1. 연구목적

-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재정운용은 성불평등한 요소를 지속시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맥락에서 2006년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음
-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 gender budgeting)은 성 평등한 예산자원의 배분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Perspective)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행정안전부, 2012)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을 말함
- 2009년 지방재정법을 전격 개정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까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었으며, 2013회계년도 지방의회에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음
- 이에 전국적으로 2012년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하게 되었음
  - 2009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실시되어 온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역에 바로 적용하는데 논란이 있어 2012년 7월 성인지예산 작성 매뉴얼을 행정안

전부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운영 준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성인지예산이 갖고 있는 제도적 의미는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된 정부 예산이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자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재정이나 공공의 예산을 쓰면 현재의 성 불평등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되었음

지방재정법 (개정: 2011. 3. 8, 시행:2011.9. 9)
<p>제36조의2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p> <p>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예산서(性認知豫産書)”라 함)를 작성하여야 한다.</p> <p>2항: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3항: 그 밖에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본조신설 2011.3.8]</p>
<p>제53조의2 9성인지결산서 작성·제출)</p> <p>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함</p> <p>2항: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함</p> <p>3항: 그 밖에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본조신설 2011.3.8]</p>
<p>부칙 제2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출 적용례)</p> <p>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함.</p>

- 행정안전부(2012)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2012년 2월까지 사전준비 작업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6월에 걸쳐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범교육과 시범작성 실

시하고, 7~8월에 기준에 대한 협의 조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는 11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있어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12월 지방의회로 하여금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음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단계에서 작성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함

##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함
- 첫째,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 과제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둘째, 최근 3년간(2009~2011년)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2012년 시범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 토대로 성인지예산 대상 과제 선정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셋째, 행정안전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을 토대로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을 예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적용 사례 작성을 통해 나타나는 제도적 절차적 한계점을 토대로 제주 지역 성인지예산제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중앙정부 성인지예산서 검토
  - 2009~2011년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검토
  - 2012년 성인지예산서 검토
  - 2013년 성인지예산서 검토
- 인터뷰
- 성인지예산서 적용 예시

### 4. 기대효과와 한계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위한 분야별 사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 과정에 예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지예산 제도 이해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성인지예산제도가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 수준의 지원체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차원의 성 주류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첫해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예시로 구체적이며, 다양한 통계 등이 명확히 제시되는데 한계가 있음
- 둘째,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작성 사례를 예시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성인지예산서 관련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 성인지예산서 작성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성인지예산서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에게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 Ⅱ. 성인지예산 개념

###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제도는 정책수행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정부정책이 양성 평등과 무관해 보이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성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예산과정에 성 인지(gender awareness) 및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정자원의 남녀차별적 배분효과를 시정하여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사업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지님(국회예산정책처, 2009).
- 성인지예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Budlender & Sharp(1998)는 성인지예산은 기술적이기 보다 정치적인 과정으로 성평등에 대한 정부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하면서 젠더관점

에서 공공지출과 세입을 재분배한다고 보았음

- 유럽의회는 성인지예산 활동을 예산과정에 있어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보고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모든 예산과정의 젠더관점 결합으로 보았음
-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은 성인지예산이 성평등한 참여를 중시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증진시켜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을 묻고 질 수 있는 good governance를 구축한다고 보았음
- 행정안전부(2012)는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개념을 정의하였음
- 이외에도 배준식 외(2009), 김영옥 외(2010), 홍미영 외(2011) 등은 ‘성인지예산’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이자 과정으로 정의하였음
- 지금까지 성인지예산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종합해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양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로 혜택이 고르게 제공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접목시킴으로써 성평등과 성 주류화를 실현 할 수 있다고 보았음



구분	국 가 (98개국)
유럽 (28)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연방,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중동 (6)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오세아니아 (4)	마셜제도, 사모아, 피지, 호주
아프리카 (23)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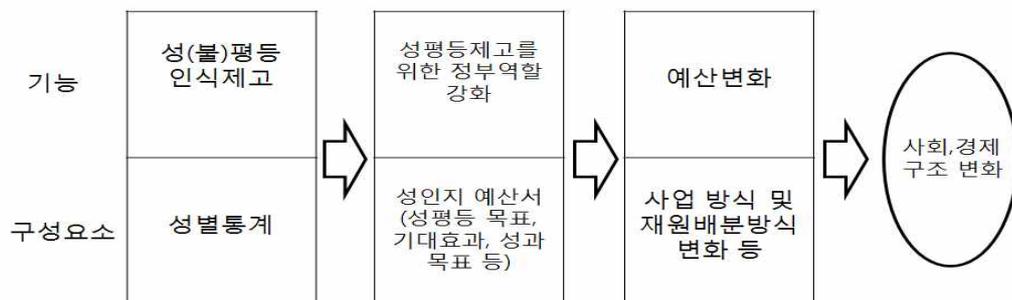
주: 여성가족부(2012)

- 성인지예산제도가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경험이 있으며,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시행되고 있음
- 공통적으로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도 운영과 국가별 동기, 관점, 추진(활동) 주체, 운영 방법과 수준, 정부 내 주도 부문과 수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2; 행정안전부, 2012).

## 2.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특징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제도를 통해 정부는 예산활동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예산의 불평등한 성별 차이를 시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산집행과 관련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특정 정책 및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긍정, 부정, 중립) 또는 특정 신규 예산사업이 기존 성별 수혜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증가, 감소, 불변 등)를 분석 점검할 수 있음
- 아울러 정부예산(세입, 세출)이 남녀, 소년/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성별수혜 효과와 영향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선진국의 경우 예산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책집행수단, 동원자원, 성과지표 등 모든 부문에 양성평등의 인식과 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2>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 및 구조



출처 : 조선주 외(2011), 재구성

- 성인지예산은 사전예산(pre-budgeting)과 사후예산(post-budgeting)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사전예산으로는 정부 내부적으로 정책개발단계에서 성별영향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관점에 입각한 비용편익분석접근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후예산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영향분석이 포함되어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책분석 기능을 지니고 있음
  - 성인지 중기 재정정책 계획(gender aware medium-term economic policy framework)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재정계획 또는 재정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성 주류화를 인지하고 통합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통적 지도층, 의회, NGO등 지역사회의 조직과 이해관계자간의 세출과 세입 측면을 반영 할 수 있음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 성인지 정책평가(gender aware policy appraisal)로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과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예산관리 시스템에서 고려 할 수 있음
  - 성별수혜분석(gender disaggregate beneficiary analysis)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출이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재정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 측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실제 및 잠재 수혜자를 고려할 수 있음
  - 공공지출귀착분석(public expenditure incidence analysis)으로 정부의 정책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남녀 성별 간에 직접적인 예산배분 상태나 수혜 상태를 추정 정책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이처럼 성인지예산서는 정부의 재정계획과 정책의 예산지원프로그램 분석평가, 예산배분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를 비교를 통해 성인지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구분	호주	프랑스	스웨덴	한국
예산서명	여성예산서 women's budget statement	재정법안 정책통합보고서- 남녀평등정책 (15개 정책 중 하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분배 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예산서 형식	<b>예산(안) 첨부서류</b>			
근거법령	없음	재정법률	없음 *별도 계획 수립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도입시기	1984년	2001년	2003년	국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2013년
담당부처	총리실 산하 여성지위실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사회연대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정부 주관 (여성평등부 협력)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주관 여성부 협력 ※지방자치단체 : 행안부, 여가부 등 지원
대상사업	성평등 관련 사업	양성평등사업 ※'10년 : 27개 사업	- 특정의제(8개) - 일반예산사업 (48개 정책영역)	양성평등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 여성발전기본계획 사업,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 행안부와 여가부 장관이 협의 한 사업, 자체사업(단체장 공약 사업 등)

출처 : 여성가족부(2012) 참조

### 3.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정착은 매우 지난하게 이루어져왔음
- 우선,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성별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주목하는데서 출발하였음
- 정책이 성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임
  -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해 분리된 예산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정부 지출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어떤 의미와 영향(implications and impacts)”가 서로 다른 성에 어떻게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임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은 결국 성평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사회·경제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 증가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성인지예산제도가 중점을 주는 부분은 정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과정이 전통적으로 일률성과 경직되어 있다는데 주목한 것임
  - 기존 예산은 가구, 소득(소득재분배 차원), 지역(균형발전 차원), 인구 특성(일부여성 포함), 지역특성(산악, 설해, 도서) 등 인문·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요한 대상 변수로 다루었으나, ‘성’ 관련 변수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 게다가 공공정책은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국민”을 하나의 일률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여성가족부, 2011)
  - 예를 들면 공공시설의 화장실 면적이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남성화장실 변기수가 여성화장실 변기수보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많이 설치되었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의 손잡이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치되면서 남성평균키보다 작은 여성이나 아동 등의 경우 이용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였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투약되는 투약기준, 공공체육시설을 주로 남성이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소규모의 여성 탈의장 등이 있음

-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변기수 조정, 키를 고려한 지하철 손잡이 설치, 투약과 관련된 연구 등을 통해 정책 개선의 효과를 가져왔음
- 결국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가운데 성인지예산제도가 포함되면서 부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율성과 만족도가 제고되는 계기를 마련함<sup>1)</sup>

<사진 1> 지하철 손잡이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행정안전부, 2006).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경험가 요구를 고려하여 변기 수를 조정함.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합 의 1.5배 이상 조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사용 가능한 변기 설치.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5~8호선 각 1편(8량)에 객차에 기존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각각 설치하였고, 서울메트로의 1~4호선의 경우 신형 전동차 노약자 앞 모든 손잡이를 낮추기로 하였으며, 2009년부터 운영되는 지하철 9호선 객차는 남성용(170cm), 여성용(163cm) 손잡이를 번갈아 설치하였음

- 2008년 출범한 실용정부는 국정과제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세부과제로 성인지 예·결산제도 정착이 채택되기도 하였음(행정안전부, 2012)

#### 4.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 성인지예산제도 정부 예산 및 비예산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 동등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 점검(모니터링), 환류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은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정책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 강화, 모든 예산과정의 성 주류화 적용임
- 결국 성인지예산제도는 기존 예산에 성 주류화를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발전 전략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성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부 내부적으로 남녀의 정책 욕구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적으로는 투명성, 책임성,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재정관리 개선, 공공자산 활용, 지방자치 단체 간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정책적 시사와 긍정적 효과를 함께 유도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1).

### Ⅲ.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성인지예산서

#### 1.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발전

##### 1) 도입배경

-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은 1995년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예산 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2001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엔여성기금(UNIFEM)회의에서 EU와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성인지예산을 실행하기로 합의한 데서 출발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는 운동에서 정부와 정당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공론화가 되었음
  - 2002년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여성 관련 자료 제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동년 11월 본회 의결, 2003년 기획예산처는 “보육예산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였음
  - 2005년에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요구함
  -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는 성인지예산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팀 구성을 통해 2006년 국가재정법제정<sup>2)</sup>시 성인지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함
-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를 개정(2006.10.4) 2010회계년도부터 성

2) 국가재정법은 기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2006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 차원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모두 7장 10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9, 타법개정)이 있음

인지 예·결산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제57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 개정(‘11.3.8)을 통해 2013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중앙부처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시 성인지예산제도 근거 마련  
(2010회계년도 예·결산서 적용)
- 2008년~2009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및 시범사업 실시
- 2009년 기획재정부 2010회계년도 성인지예산서 국회 제출
-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범위 기금까지 확대  
분석 내용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명시
- 2011년도 기획재정부 2010년 성인지결산서 국회제출

• 지방자치단체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2013년회계년도 부터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2007.12발표) 및 실용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 채택(2008.10)
- 지방재정법 개정(2011.3.8)과 시행(2013년 회계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표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발전과정

연도	지방재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9 신낙균 의원 등 34인이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li> <li>-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11. 29 국회 전체회의 심사에서 법률안 대안 가결</li> <li>- 2011. 12. 7 법사위체계자구심사 법률안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li> <li>- 2011. 8. 19 본회의 심의에서 법률원안 가결</li> <li>- 지자체별 성인지예산제도 적용방안 연구 추진</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 2011. 3. 8</li> <li>지방재정법 시행: 2011. 9. 9</li> <li>- 지방재정에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근거 마련</li> <li>-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적용 지침</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2011. 10~11(여성가족부)</li> <l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2012. 3. 8(행정안전부)</li> <li>- 성인지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 2012. 7</li> <li>- 성인지예산서 시범사업 작성 결과 전산입력 완료 : 2012. 4. 16</li> <li>- 시범작성 성인지예산서(인쇄) 제출 : 2012. 4. 30</li> <li>-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 개선 및 보완사항 제출: (시군구 → 시도: 2012. 5. 11. 시도 → 행정안전부: 2012. 5. 18)</li> <li>- '13회계년도 성인지예산서 본격 작성 : 2012. 하반기</li> </ul>

\*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그러나 우리 실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 실시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용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앞서가는 수준이나 제도 운영과 달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서로 다르고, 민선 지방자치 체계의 독자성을 감안해 볼 때, 제도 적용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음

## 2) 발전과정

- 현행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을 보면, 그 편성방식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부처에서 편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기획재정부가 취합하는 방식이며, 성과주의 예산운용 체계에 부합하는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조선주 외, 2011; 홍미영 외, 2011).
- 성인지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성인지 예산의 규모,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그리고 성인지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시된 지표로 제시된 성평등 목표의 경우 총괄 예산관련 부서, 부처별, 사업부서별 개별 목표가 서로 연계성과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2013년회계년도 처음 작성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작성 사례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성인지예산서 선정기준과 성평등 목표, 대상사업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서 대상 설정 등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임

## 3) 법적근거

-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 우리나라 헌법은 “성인지예산제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음

- 헌법 조문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규정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음
  - “정치·경제·사회·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동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보장, 동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등이 이에 해당됨
- 우리나라 헌법은 여성에 대한 평등 및 배려를 중요한 이념으로 인식 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남녀평등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단순한 여성예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가재정 관련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는 2006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표 4>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구분		주요내용
국 가 재 정 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개정 2010.5.17> 5.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1항: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성인지예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3항: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5.17>

구분		주요내용
국 가 재 정 법	제57조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1항: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성인지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	1항: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5.17]
	제73조의2 (성인지 기금 결산서의 작성)	1항: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성인지 기금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0.5.17]
지 방 재 정 법	제36조의2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항: 그 밖에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관한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3.8]
	제53조의 (성인지결산서 작성·제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항: 그 밖에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3.8]
	부칙 제2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구분		주요내용
지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40조의2 (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1항: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어야 한다. 1.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교모 2.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항 성인지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1.9.6]
	제63조의2 (성인지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1항: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결산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결산의 개요 2.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2항: 성인지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1.9.6]
	부칙 제3조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 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년도 예산안 및 결 산부터 적용한다.

#### 4) 중앙부처 성인지예산 운영 현황

- 중앙부처는 2009년 처음 성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을 시작으로 2012년 254개 사업의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 2010년 195개 사업, 2011년 245개 사업, 2012년 254개 사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제도 초기에 비하여 29.2%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은 전년 대비 3.6%의 과제가 증가하는데 그쳤음
- 성인지예산은 2010년 314,447백만원, 2011년 10,174,846백만원, 2012년 10,704,245백만원이나, 2012년은 전년 대비 529,399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제출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음

<표 5>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및 현황(2010~2012)

(단위 : 개, 백만원)

기관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총계	195	7,314,447	245	10,174,846	254	10,704,245
국회			1	8,264	1	8,264
대법원					2	52,438
기획재정부	1	457	2	3,000	3	3,317
교육과학기술부	4	3,915	17	824,442	14	593,189
외교통상부	1	37,560	8	42,649	10	135,393
통일부	2	62282	2	12,847	2	17,599
법무부	5	34,626	7	42,722	12	74,484
국방부	3	1,394	3	4,570	3	11,907
행정안전부	10	32,758	9	20,682	10	74,357
문화관광체육관광부	14	72,210	23	112,132	23	136,103
농림수산식품부	22	215,293	27	233,739	22	172,447
지식경제부	4	63,764	3	36,056	3	38,458
보건복지부	27	5,084,254	33	6,101,851	34	6,626,344
환경부	5	31,027	7	27,763	7	28,615
고용노동부	11	456,974	22	1,929,814	26	1,898,987
여성가족부	28	67,682	29	203,063	31	238,189
국토해양부	7	18,869	6	50,550	5	49,706
법제처	1	828	1	795	1	810
국가보훈처			1	18,611	2	27,998
국가인권위원회	2	95	2	77	2	139
공정거래위원회			1	249		
금융위원회	1	2,500	1	1,700	1	1,350
국민권익위원회			1	9	1	29
국세청	2	353	1	115	1	115
조달청	1	190	1	190	1	190
통계청	1	1,421	3	13,620	1	1,212
경찰청	-	-	1	856	2	1,290
문화재청	1	3,479	3	18,162	3	15,397
농촌진흥청	11	23,937	10	21,327	11	29,535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산림청	2	38,050	2	34,245	4	28,881
중소기업청	8	399,398	10	401,060	9	426,844
특허청	3	4,234	3	4,925	3	5,112
식약청	-	-	1	2,838	2	4,500
기상청	1	400	-	-	-	-
해양경찰청	1	388	3	638	1	280
항상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766	1	1,785	1	766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한눈에 보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과제수가 증가하면서 회계별 성인지예산서 역시 일반회계 사업이 168개로 전체 예산서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사업 40개 15.8%, 기금 사업 46개 18.2%로 각각 나타났음

<표 6> 성인지예산서 선정기준별 작성현황(2010~2012)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제출기관		29개 기관	34개 기관	34개 기관
일반회계	사업수	156	159	168
	예산액	70,233	81,309	85,982
특별회계	사업수	39	43	40
	예산액	2,912	2,923	2,481
기금	사업수	-	43	46
	예산액	-	17,516	18,579
계	사업수	195	245	254
	예산액	73,144	101,748	107,042
	정부 총지출 대비	2.5%	3.3%	3.3%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한눈에 보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 예산서를 가장의 여성 수혜자 비율을 보면 31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7>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09~2011)

(단위 : %)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국회	55.0	50.0	60.2
대법원	50.3	50.4	50.4
기획재정부	58.5	83.3	77.5
교육과학기술부	49.8	50.3	50.6
외교통상부	56.9	57.1	58.5
통일부	71.5	77.2	77.3
법무부	9.7	28.2	34.0
행정안전부	56.9	56.8	57.0
문화체육관광부	44.3	50.9	52.1
농림수산식품부	32.2	34.7	34.5
지식경제부	22.8	28.4	24.9
보건복지부	52.3	52.3	54.1
환경부	27.1	31.3	32.9
고용노동부	53.6	36.9	36.6
여성가족부	57.2	56.8	62.0
국토해양부	18.7	21.5	23.8
법제처	16.4	19.8	19.8
국가보훈처	15.8	16.6	22.3
국가인권위원회	50.2	50.2	50.2
국민권익위원회	13.1	13.7	16.0
국세청	-	47.7	48.2
조달청	55.1	42.3	44.4
통계청	47.7	46.3	49.0
경찰청	19.2	19.4	19.8
문화재청	25.6	27.0	28.6
농촌진흥청	12.4	13.7	13.8
산림청	11.8	19.3	20.5
중소기업청	41.4	42.3	43.1
특허청	47.2	39.2	40.8
식품의약품안전청	72.4	67.4	6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9.2	63.4	59.0
평균	44.8	47.9	49.2

\* 출처 : 한눈에 보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2011)

- 여성 수혜비율이 평균 49.2%로 나타났으나,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중앙 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 운영에 따른 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우선, 제도 도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데 있음
  - 다음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 사업 규모 영세성,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연계성 미흡, 대상사업 선정 실용성 결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절차 체계성 결여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연계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사업 선정기준, 적절한 성별통계 및 미흡한 원인분석 등 제도 운영의 내적인 측면에 있어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앞서 중앙 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예측 되는 문제를 개선제도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함

## 2. 지방자치단체와 성인지예산제도

### 1) 지방자치단체와 성인지예산제도 관계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을 통해 정책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지방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  
 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특정범주가 아  
 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여성가족부, 2012:행정안전부, 2012)으  
 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실질적인 배분을 의미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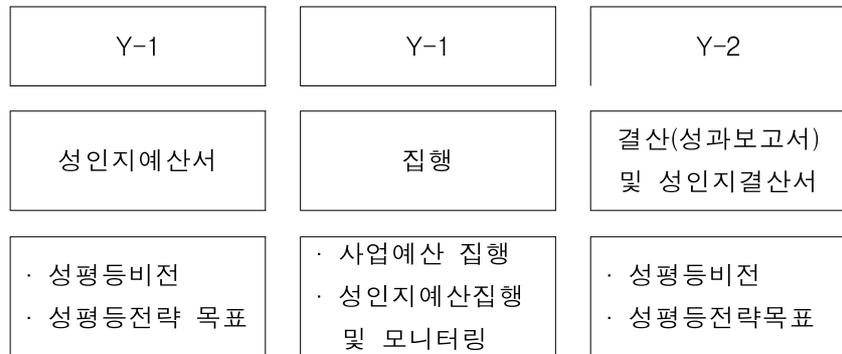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성인지예산제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재정은 다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며, 교육재  
 정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별도로 운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에서 일반회계예산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의 재조합이며, 특별  
 회계예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하는 예산제도임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분리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학·체육 등에 관한 특별회계인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은 주로 국가재정운용방향,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각종

3) 정부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편성된다. 정부예산을 동전으로 볼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정부예산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세입예산은 정부예산의 재원 동원 방법을 표시해 주며, 세출예산은 정부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지출 용도를 나타내 준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효력은 서로 다르  
 다. 세입예산의 수치는 경제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수입의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 수치는 추정  
 에 바탕을 둔 임의적 성격을 갖는다. 즉, 세입예산의 금액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에 의해 조세의 부과 및 변경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이것은 추정된 세입 금액과는 상  
 관없다. 반면에 세출예산의 수치는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입법  
 부에서 지출 권한을 부여한 지출 한도액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강제적 성격을 갖는 세출예산의 효  
 력은 지출 목적, 지출 금액, 지출시기 면에서 발생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1).

경비의 기준, 과목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성인지예산의 운용목표, 성인지예산개요, 사업의 성평등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의하여 지침과 기준이 정해졌음
-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재정의 실무적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통해 성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성인지예산서(性認知豫算書, gender responsive budget)와 성인지결산서(性認知決算書, gender responsive closing accounts) 가운데 본 지침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림 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절차



-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도, 시·군·구 단위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을 기준으로 토대로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와 각 부서별, 각 사업별 성평등 목표가 연계성을 지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정 후 성인지예산안

작성, 사업(성과)예산서와 동시에 성인지예산서를 심사·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음

- 이때,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단순히 예산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숫자가 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 가령 예산사업 수혜의 성별 격차가 있다면, 이 격차는 '왜' 나타나게 된 것인지, 격차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해당 사업에서 나타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 젠더이슈와 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통찰하는 노력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임
-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예산활동에 참여함
- 공무원들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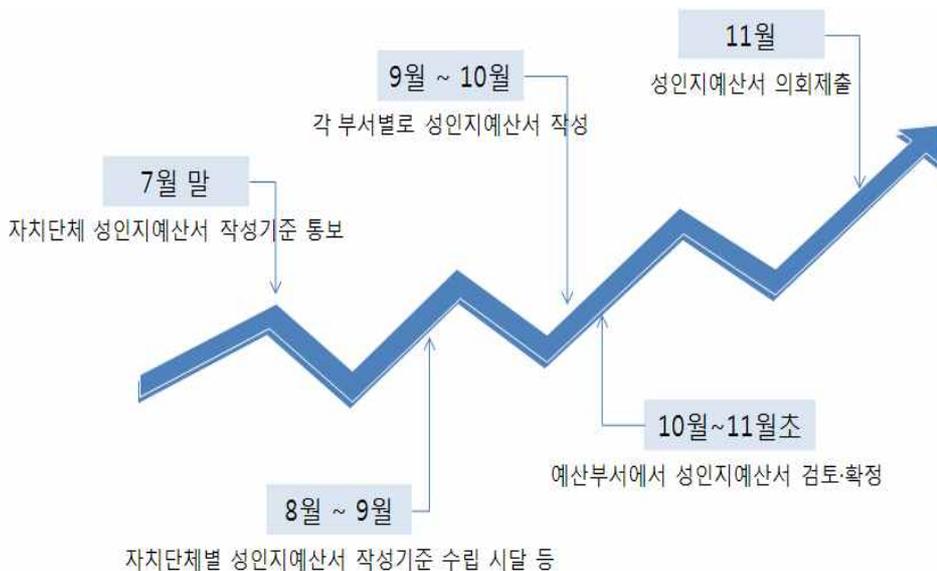
### (1) 운영체계

-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예산 편성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편성은 매년 9-11월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10월 15일까지(중앙 각 부처) 작성함
- 예산(안) 의회제출(지방자치법 §127①)은 시·도는 매년 11월 11일까

지(회계년도개시 50일전), 시·군·자치구는 11월 21일까지(회계년도개시 40일전)에 이루어짐

- 지방의회 심의·의결(지방자치법 § 127②)은 시·도는 12월 16일까지(회계년도개시 15일전), 시·군·자치구는 12월 21일까지(회계년도개시 10일전) 이루어짐
- 의결예산이송(의회→단체장) : 의결 후 3일 이내 (지방자치법 §133①)이며, 예산편성 결과보고 및 고시는 이송 받은 즉시(지방자치법 §133 ②)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편성시기 및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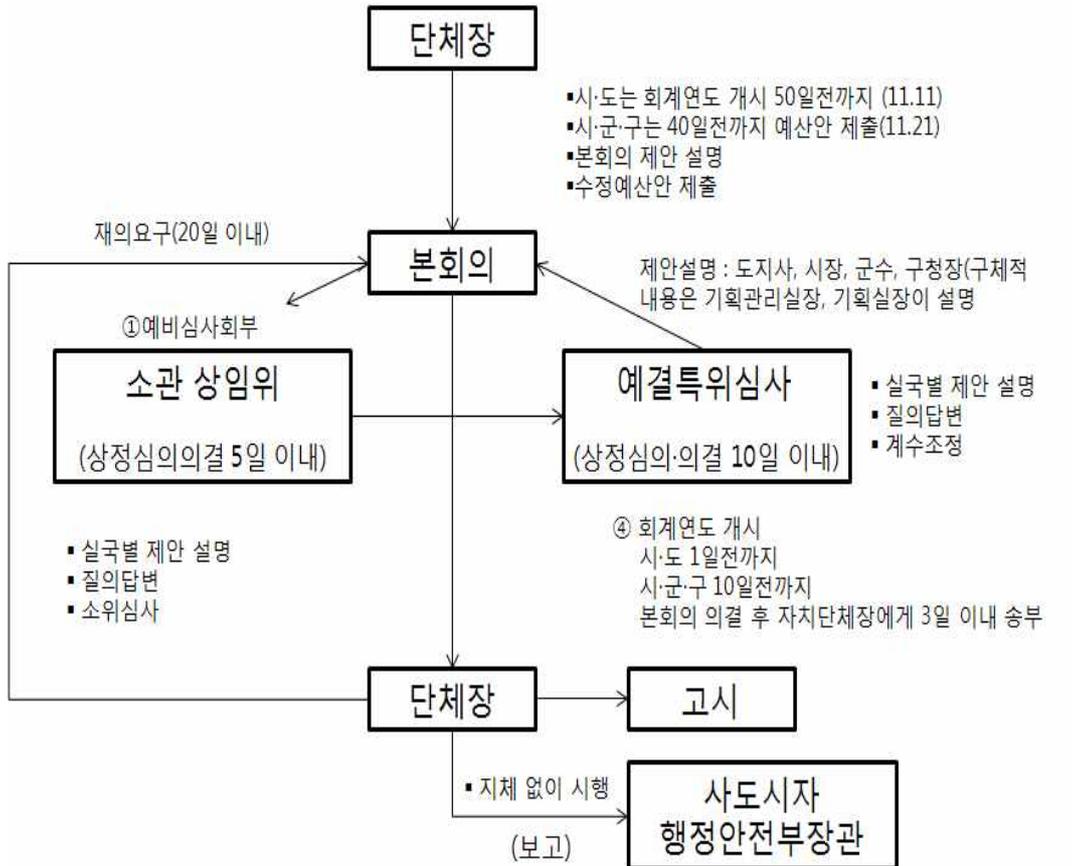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은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 심의·의결 → 확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편성내용은 분야·부문·정책사

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으로 이루어짐

- 예산요구는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실·국·과장(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 카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요구는 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됨
- 세출예산요구는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하게 됨
- 성과예산서의 경우, 사업예산을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함
- 성인지예산서는 세출예산요구서 중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예산 편성절차와 같이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본적인 운용체계도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심사, 다음연도 예산반영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출단계와 지방의회 제출단계에서도 예산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한 후에는 예산서에 대한 종합평가와 차년도 예산서 작성지침이 작성되어야 함

<그림 5>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 심의 의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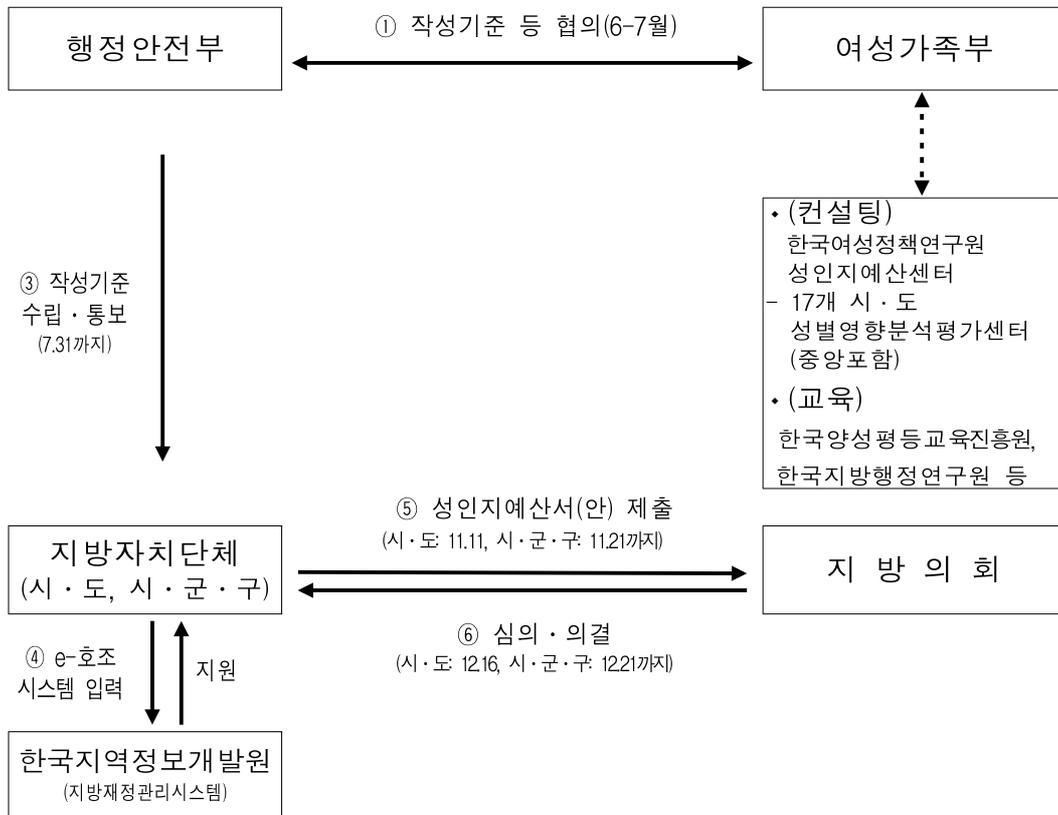
\* 자료: 행정안전부(2012)를 참조

## (2)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사전준비 단계, 시범사업 실시 단계, 본격 작성 등 2013년 회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추진되었음
- 사전준비 단계(2012. 2)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전문가그룹의 연

구를 통해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과 작성양식 등을 개발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내용을 전산프로그램(e-호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하였음

<그림 6>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출처 : 행정안전부(201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시범사업실시(2012년 상반기) 단계 진행
- 구체적 성인지예산서 작성 워크숍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

- 2012년도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전 자치단체 시범작성을 통해 작성된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발굴하며 필요시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등에 수정·보완하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가이드라인

#### (1) 작성범위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작성범위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함
- 성인지예산서 작성 원칙은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8>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1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li> <li>※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li> <li>※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li> </ul>
권장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 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li> <li>※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li> <li>※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li> </ul>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출처 : 행정안전부(201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3. 제주특별자치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 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개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로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4)를 통해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
-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제·개정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주요 사업 등을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법령·사업·계획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제11046호)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16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국적으로 17개소<sup>5)</sup>가 개소 운영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빠르게 확산된 계기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성 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성 주류화 전략 도구인 성별분리통계, 성 인지 예산 분석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47개 까지 확대되었음

---

4)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5)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정되면서 총 17개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2)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 1개 과제, 2006년 1개, 2007년 15개, 2008년 21개, 2009년 25개 과제, 2010년 24개 과제, 2011년 47개 과제가 분석평가 되었음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구조체계에서 2009년부터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2009년 제주시 8개, 서귀포시 4개, 2010년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8개 과제, 2011년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9개 과제가 분석됨

<표 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2006년~2011년)

(단위: 개수,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sup>6)</sup>	합계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합계
제주	1		1	15		15	21	-	21	25	11	36	24	16	40	29	18	47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행정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정부기능 분류시스템(BRM)으로 분류하면 일부 과제가 편중되어 있음

6)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단일화로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나, 편의상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 성격으로 구분하였음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BRM분석(2005~2011)

분류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공질서 및 안전	-	-		-	1	1	1
과학기술	-	-	-	-	1	-	1
교육	-	-	3	2	5	6	4
농림해양수산	-	-	2	3	2	5	3
문화체육관광	-	-	1	1	4	8	5
보건	-	-	-	2	-	-	-
사회복지	1	1	4	8	9	8	18
산업·중소기업	-	-	2	1	-	3	1
수송 및 교통	-	-	1	-	1	3	1
일반공공행정	-	-	2	3	6	4	9
지역개발	-	-	-	1	2	1	-
통신	-	-	-	-	3	1	-
환경보호	-	-	-	-	2	-	3
기타	-	-	-	-	-	-	1
계	1	1	15	21	36	40	47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증가는 초기 매우 저조 하였으나, 2007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수가 대폭증가하면서 BRM분야 역시 다양해졌음
- 초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과제로 인식되었으나, 2007년부터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 선정,

추진체계, 예산 확보 등 성 주류화의 영역이 일부 확장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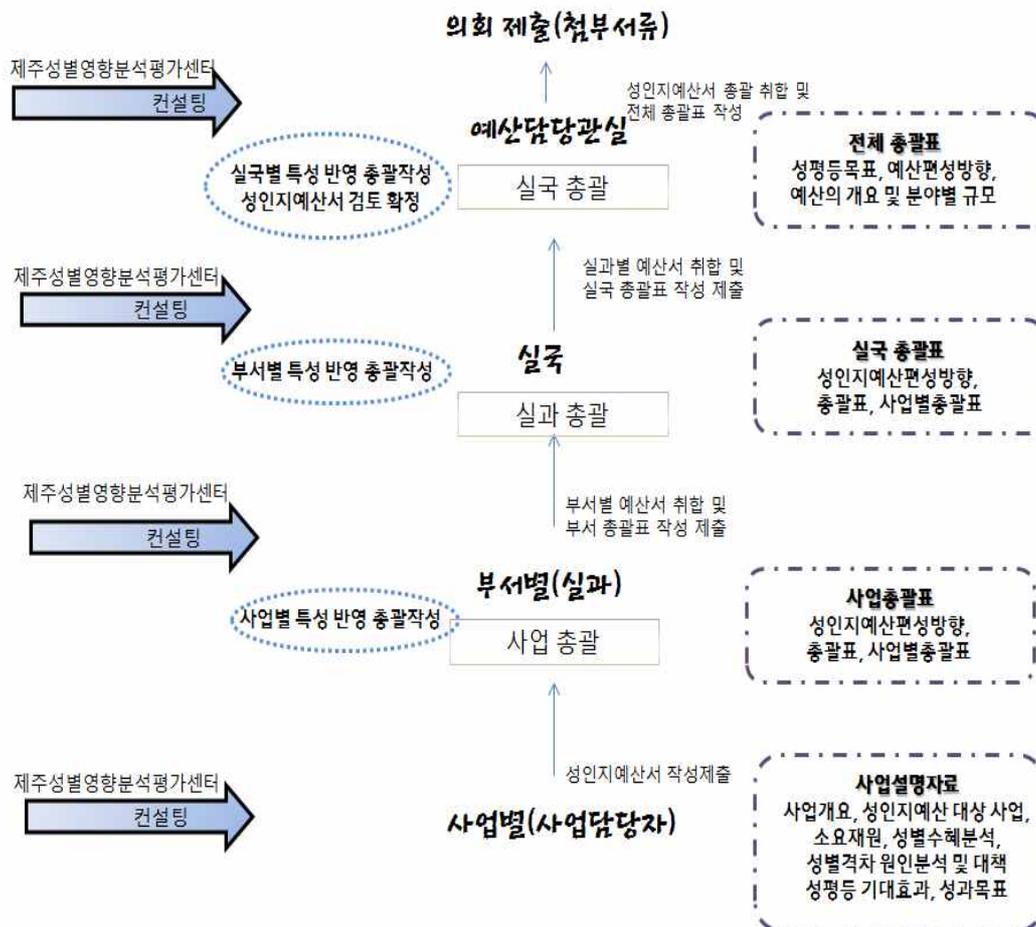
- 특히, 2011년도 추진된 과제의 경우 BSC확대로 자발적인 과제평가 참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오히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가 아닌 과제가 제출되는 등 일부 과제 분석에 있어 제도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는 최근 3년간 분석된 예산 사업으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2009년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가운데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분석된 과제 가운데 계속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성인지예산 과제로 선정 작성할 필요가 있음

## IV.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

### 1. 성인지예산서 추진체계

-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7>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추진 체계



## 2.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2년 시범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는 총 22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14개, 기타 특별회계 7개로 예산액은 141,448백만원임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21 (224)	141,448	123,877	17,571	14.18%
일반회계	214 (217)	135,884	120,134	15,749	13.11%
기타특별회계	7 (7)	5,564	3,743	1,821	48.66%

- 본격적으로 작성된 2013년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는 155개 사업 58,324백만원임

<표 12> 2013년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개요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55	58,324	54,267	4,058	7.48%
일반회계	155	58,324	54,267	4,058	7.48%
기타특별회계	-	-	-	-	-

- 사업별로 보면 221개 사업 가운데 여성 정책기본사업 36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5개 사업, 기타 110개 사업으로 여성 정책 관련 분야가 5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3> 2013년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수	예산액
총계		221	141,448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소계	36	16,799
	일반회계	36	16,799
	기타특별회계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75	27,409
	일반회계	73	27,380
	기타특별회계	2	29
기타	소계	110	97,240
	일반회계	105	91,705
	기타특별회계	5	5,535

- 2012년 시범 작성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68개 가장 많이 제출됨
  - 일반공공행정의 경우 자치행정·재정 1개 과제, 일반행정 67개 과제
  -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3, 재난방재·민방위 11개 과제
  - 교육 3개 과제로 평생·직업교육 3개 과제
  -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은 관광 6개 과제, 체육 4개 과제, 문화재 2개 과제, 문화 및 관광 일반 1개 과제
  - 환경보호는 상하수도·수질 2개 과제, 폐기물 2개 과제, 대기 2개 과제, 자연 2개 과제
  -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1개, 취약계층 지원 3개,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26개 과제

- 보건은 보건의료 13개, 식품의약품안전 1개 과제
  - 농림해양수산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등 25개 과제
  - 산업·중소기업은 무역 및 투자유치 3개, 산업진흥·고도화 8개, 에너지 및 자원개발 2개, 산업·중소기업일반 1개 과제
  - 수송 및 교통은 도로 4개 과제, 대중교통·물류 등 4개 과제
  - 국토 및 지역개발은 지역 및 도시 5개 과제
- 2012년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한 조직을 보면 본청, 외청,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청은 총무과 1개, 국제자유도시본부 3개, 특별자치행정국 4개, 문화관광스포츠국 2개, 보건복지여성국 9개, 도시디자인본부 4개, 소방방재본부 2개, 자치경찰단 1개, 수출진흥본부 3개, 지식경제국 7개, 청정환경국 6개, 농축산식품국 4개, 해양수산국 4개 등 총 50개 과제가 제출되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원 2개, 인재개발원 2개, 제주소방서 2개, 서귀포소방서 2개, 서부소방서 2개, 동부소방서 2개 등 12개 과제가 제출됨
  - 외청은 제주시 61개, 서귀포시 38개로 99개의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었으며, 수자원본부 2개, 문화예술진흥원 2개, 민속자연사박물관 2개, 축산진흥원 1개, 해양수산연구원 1개, 한라도서관1개, 제주도립미술관 2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개, 43개 읍면동별 각 1개 과제(43개)가 제출되었음
- 그러나 2012년 시범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는 선정된 사유나 여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향후 추진계획, 성평등 기대 효과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제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통한 성평등 효과를 도출하는 시범평가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2013년 성인지예산서는 본청 28개 사업, 직속기관 9개 사업, 제주시청

38개 사업, 서귀포시청 29개 사업, 사업소 7개 사업, 읍면동 44개 사업  
 (제주시 읍면동 26개 사업, 서귀포시 읍면동 18개 사업)으로 나타났음  
 - 조직별로 볼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  
 이 본청 전체 사업의 53.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4> 성인지예산서 제출 조직 비교(2012~2013)

(단위 : 개, %)

구분	2012	2013	증감
총계	221	155	△29.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50	28	△44.0
직속기관	12	9	△29.9
사업소	17	7	△58.8
제주시청	61	38	△37.7
서귀포시청	38	29	△23.7
제주시 읍면동	26	26	5.8
서귀포시 읍면동	17	18	△29.9

- 2013년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은 2012년은 취업, 인력활용,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2013년은 기반확대, 건강과 복지, 전문기관 설립 운영으로 제시되었음

<표 15>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비교(2012~2013)

	2012년	2013년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li> <li>- 직장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li> <li>▪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li> <li>-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li> <li>▪ 양성평등문화 확산</li> <li>-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권의 보호 및 일·가정 양립확산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기반 조성</li> <li>- 출산율 2.0플랜 정책지원: 출산장려, 보육환경 개선 등 지원</li> <li>-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li> <li>-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여성 여성능력개발 기회 제공</li> <li>▪ 여성의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 충족</li> <li>- 여성에게 특화된 보건프로그램 지원</li> <li>- 여성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 강화</li> <li>- 건강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의 건강권과 가족 건강서비스 지원</li> <li>▪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운영</li> <li>-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주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추진</li> <li>- 제주 여성 거버넌스포럼 운영 활성화 및 평생학습 허브역할 수행</li> </ul>

○ 성평등목표는 2012년 예산편성 방향은 지지기반 강화, 고용여건 개선, 사회참여 확대인 반면, 2013년 예산편성방향은 일자리 강화,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으로 기술되었음

<표 16> 성평등목표 비교 (2012~2013)

	2012년	2013년
성평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기반 강화</li> <li>- 도농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li> <li>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li> <li>-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경제 활동 참여 제고</li> <li>▪ 여성사회 참여 확대</li> <li>- 여성사회교육 확대, 여성대학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li> <li>▪ 여성친화형 일자리 강화 사업</li> <li>▪ 여성 및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과 사회통합</li> </ul>

- 성인지예산서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비교(2012~2013)

(단위 : 개, %)

구분	2012		2013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총계	221	100	155	100
일반공공행정	68	30.8	57	36.8
공공질설 및 안전	14	6.3	1	0.7
교육	3	1.3	1	0.7
문화 및 관광	35	15.8	21	13.5
환경보호	9	4.1	4	2.6
사회복지	26	11.8	30	19.4
보건	14	6.4	9	5.8
농림해양수산	25	11.3	23	14.8
산업·중소기업	14	6.3	4	2.5
수송 및 교통	8	3.6	4	2.5
국토 및 지역개발	5	2.3	1	0.7

### 3. 예산부서의 성인지예산서

#### 1) 작성항목과 양식

I. 성평등 목표

○  
—

○  
—

II. 2013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개 (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기타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구분	개수 ( )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중략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90 보건							
100 농림해양수산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계						
000국						
000과						
000과						
000국						
000과						
000과						
직속기관						
사업소						

2) 작성 TIP

I. 성평등 목표

- 성평등 목표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단체장의 공약사항 등을 고려 예산부서에서 총괄 작성을 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단체장의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 성평등 목표는 1~3개로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함
- 이때 제시된 성평등 목표는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이 포괄되어야 함

## II.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성평등 목표와 연계, 어떻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는가를 기술해야함
  -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개수, 분야, 규모에 초점을 두어 작성해야함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내용을 참조하여 총괄 작성하도록 함

##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는 e-호조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되므로 담당자는 자동 입력된 결과를 추출하여 첨부하도록 함
  - 분야별 규모에서 사업별, 기능별, 조직별 총괄표를 각각 추출하여 총괄작성 해야 함

### 3) 작성예시

I. 성평등 목표
-----------

- 성평등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성주류화 정착
  -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확대를 통한 업무 전반 성인지적 관점 확산
  - 성인지예산을 통한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분배의 정의 실현
- 양성평등한 문화 기반 강화
  -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 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서비스 확대
  - 여성의 재취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연령별·대상별 복지 욕구 충족

※ 성평등 목표는 예산부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여성정책은 물론 전체 제주도 정책의 방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술해야하며, 특별히 단체장의 공약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단체장의 공약 사항의 경우 민선5기 출범 당시 합계출산율 제고(1.37명→1.5명), 보육시설 국공립 비율 확대(4.0%→6.0%), 여성행복 제주 플랜, 여성 취창업지원 정책 강화,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엄마와 어르신이 행복한 제주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II.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00개 사업의 000,000백만원임
- 2013년 성인지예산은 보육분야, 여성취업지원분야, 교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00개(00,00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00개(00,000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00개(00,000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00개(00,000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00개(00,000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 0개(00,000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0개(00,000백만원), 기타분야 사업 0개(0,000백만원)임

**※ 제주도본청과 동일하게 행정시별로 예산 편성방향을 기술하되,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제주도 본청의 방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함**

##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는 e-호조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되므로 담당자는 자동 입력된 결과를 추출하여 첨부하도록 함
  - 분야별 규모에서 사업별, 기능별, 조직별 총괄표를 각각 추출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작성 하여야 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00	539,000			
일반회계	90개 ( 개)	400,500			%
기타특별회계	10개 ( 개)				%

√ 총괄표 e-호조 시스템 활용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개 (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성별영향 분석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기타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 사업별 총괄표 e-호조 시스템 활용

기능별 총괄표

분야·구분	개수 ( )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기능별 총괄표 e-호조 시스템 활용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000국							
000과							
000과							
000국							
000과							
000과							
직속기관							
사업소							

√ 조직별 총괄표 e-호조 시스템 활용

※ 예산부서에서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삭제해도 무방함

#### 4. 실·국의 성인지예산서

##### 1) 작성항목과 양식

IV. 실·국 성인지예산서

○○○○ 실·국

2013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개 (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성별영향 분석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기타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 2) 작성 TIP

### IV.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해당 실국의 명칭을 쓰고, 실·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이 사업을 제출한 성인지예산서를 토대로 도출하도록 하며, 이때 제시된 편성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과 부합해야함

#### 총괄표 및 사업별 총괄표

- 실국별 총괄표 및 사업별 총괄표를 기술하되, e-호조시스템에 자동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총괄표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 개수와 예산액, 전년도 비교 증감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총괄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기타로 구분되며, 역시 e-호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3) 실·국별 총괄 부서별 작성 항목

### IV. 실·국 성인지예산서

보건복지여성국

#### 2013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성인지예산은 총 0개 사업 0,00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돌봄 경감을 위한 보육분야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 취업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0개(0,00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0개(0,000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0개(0,000백만원)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    개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    개 )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    개 )			%
	일반회계	(    개 )			%
	기타특별회계	(    개 )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 계	(    개 )			%
	일반회계	(    개 )			%
	기타특별회계	(    개 )			%
기타	소 계	(    개 )			%
	일반회계	(    개 )			%
	기타특별회계	(    개 )			%

√ 총괄표와 사업별 총괄표 e-호조 시스템 활용

## 5. 실·과의 성인지예산서(사업총괄표)

### 1) 작성항목과 양식

V.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실·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개 (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성별영향 분석사업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기타	소 계	개 ( 개)				%
	일반회계	개 (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개)				%

V. 실·과별 성인지예산서

※ 해당 실과의 명칭을 쓰고, 실·과별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기술하여야 함

□ 총괄표 및 사업별 총괄표

- 실과별 총괄표 및 사업별 총괄표를 기술하되, e-호조시스템에 자동 입력 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총괄표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 개수와 예산액, 전년도 비교 증감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총괄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기타로 구분되며, 역시 e-호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3) 실적별 총괄 부서별 작성 항목

#### V. 실·과 성인지예산서

##### 여성정책과

#### □ 2013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2013년도 여성정책과의 성인지예산은 총 0개 사업 0,00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보육 시설 등 돌봄 경감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0개(0,00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0개(0,000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0개(0,000백만원)임
  - 기능별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0개(000백만원), 사회복지일반 0개(0,000백만원)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    개 개)				%
기타특별회계	(    개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    개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    개 개)			%
	일반회계	(    개 개)			%
	기타특별회계	(    개 개)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 계	(    개 개)			%
	일반회계	(    개 개)			%
	기타특별회계	(    개 개)			%
기타	소 계	(    개 개)			%
	일반회계	(    개 개)			%
	기타특별회계	(    개 개)			%

√ 총괄표와 사업별 총괄표 e-호조 시스템 활용

## 6. 실·과의 사업별 성인지예산서(사업별 설명자료)

### 1) 작성항목과 양식

<b>2. 사업별 설명자료</b>		
(세부사업명)○○○○ (회계명)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본 사업이 해당되는 칸에 ○ 표시		

□ 소요재원

재원별	전년도 당초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자치단체부담금				%
기타				%

□ 성별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예: 통계청 지역통계 xx시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예: xx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비율)	(%)	(%)	(%)
남성(비율)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평등 기대효과

- 
-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11년까지 실적	'12년	'13년 계획
(예) 2015년까지 여성 장애인 일자리 30% 제공 (일자리 제공 비율<%=> : 여성장애인 취업자 수 / 여성장애인 수)	%	%	%

## 2) 작성 TIP

### 사업개요

- ※ 사업개요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함
- ※ 성인지예산서로 사업개요를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하지 않고, 정책이 구조적으로 성평등 또는 성불평등한 관점으로 개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 대상 사업의 유형을 체크하는 것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대상 사업의 유형을 체크하고 나서 유형에 해당되는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가령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사업인지, 기타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 세부적으로 대상 사업의 유형을 설명하여야 함

### 소요예산

- ※ 소요예산은 재원별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재원별로 작성을 하여야 함
-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되므로 해당 없는 제원은 삭제가 가능함

성별 수혜분석

- ※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 등 크게 3개 지표를 기술해야함
- ※ 우선 사업대상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성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 예산 구분 등 각 지표의 성별 분리통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별에 대한 양식을 삭제하고 성별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성별격차 원인과 대책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있어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로 분류 될 수 있으므로 성인지예산 분석을 하는데 있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한 구분을 하여야 함
- ※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제시되는 통계는 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지역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활용한 통계의 출처와 연도를 제시하여야 함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앞에서 제시된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기술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과 여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함
  - ※ 우선 여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기술해야함
- 예를 들어 여성쉼터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에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에 대하여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기술하고, 쉼터 안전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대책을 기술하도록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가운데 여성 수혜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여건이나 정책 수요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함

예를 들어 문화해설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참여에 있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참여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기술되기보다, 근로시간, 급여 등 남성어르신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임을 제시하여야 함

※ 반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서 남성의 수혜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여성의 참여가 낮은 상황을 사회문화적 여건과 정책 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함

예를 들어 농업기술 교육의 경우 여성이 최근 농업 협업자로 지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을 기술해야하며, 이때 여성의 경우

### 3) 작성예시

예시) 여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일반회계)

□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사업기간 : 2013년 01월01일~2013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총사업비 : 351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운영지원  
                   이주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상담인력 배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tip

- 사업의 개요는 사업계획 당시 작성한 개요를 그대로 기술하도록 함
- 사업목적은 사업목적, 기간, 추진근거 총사업비, 사업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사업의 개요를 성인지예산서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타당한 사업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기술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초 세출예산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함
- 사업기간은 대상사업의 시행연도부터 시행마감까지 총 사업기간을 작성함
- 추진근거는 대상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로 해당 법령, 조례 및 조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 제4차 여성정책(2011~2014) 추진사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임
-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임

tip

- 사업 대상 여부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달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인지예산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대상 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제시해야함

소요재원

(단위: 백만원)

재원별	전년도 당초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93	351	58	19.80%
예산총계	293	351	58	19.80%
기금보조금	147	161	14	9.52%
자체재원	0	30	30	100%
도비부담금	147	161	14	9.52%

tip

- 소요 재원은 당초 예산명과 예산재원을 e-호조 상에 기입된 것을 그대로 기술하도록 함
- 이때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도 가능함

성별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며, 현재 2010년 기준 성폭력 관련 검거건수가 313명으로 1년에 성폭력사건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흉포화 되고 있음
- 여성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은 69명으로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 인원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69명	69명	69명
여성(비율)	69명(100%)	69명(100%)	69명(100%)
남성(비율)	(0%)	(0%)	(0%)

\*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검거건수

tip

- 본 사업은 성인지예산서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모집단)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 경우는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기술하지 않고, 전반적인 이유를 제시하여도 됨
- 단,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는 연도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계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별수혜분석

○ 사업수혜자

- 사업수혜자는 여성복지시설 이용자로 2012년 현재 307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음

- 이 가운데 남성은 여성이용자의 자녀로 전체의 7.5%에 해당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07명	320명	333명
여성(비율)	284명(92.5%)	290명(90.6%)	301명(90.4%)
남성(비율)	23(7.5%)	30(9.4%)	32(9.6%)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여성복지시설 및 보호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모자보호 복지시설 및 생활

- 종사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69명	69명	69명
여성(비율)	69명(100%)	69명(100%)	69명(100%)
남성(비율)	(0%)	(0%)	(0%)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 연도별 이용자는 307명으로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여아이며, 남성비율은 가정폭력 피해 자녀의 남아임

- 연도별로 꾸준히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이 3년/연장 2년임을 감안한다면, 연도별 시설 이용자수의 변화가 향후 증가

tip

- 성별 수혜자에서 본 사업은 성인지예산서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모집

단)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 경우는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기술하지 않고, 이유를 기술하도록 함

-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설 중사가 있는 경우, 사업 수혜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각 개별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제시함
- 대상자는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자로 개인, 집단 또는 불특정 다수의 모집단으로 이에 대한 산출이나 집계는 통계청, 도청 등에서 생산한 통계 연보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도록 함
- 통계 제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며, 성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이유를 하단에 기재하도록 함
-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추진 사업인 경우 여성이 수혜율 100%인 사업의 경우 여성 값만 기재하도록 함
- 수혜자 및 대상자에 대한 통계정보는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 시스템(<http://gsis.kwdi.re.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ju.go.kr>), 제주시청(<http://www.jejusi.go.kr>), 서귀포시청(<http://www.seogwipo.go.kr>), 제주발전연구원(<http://www.jdi.re.kr>) 등에서 관련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51	351	351
여성(비율)	372(97%)	(97%)	(97%)
남성(비율)	(6%)	(6%)	(6%)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은 대부분 여성이 수혜자의 비율이 높은 실정임
-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92.1%가 전과가 없는 자로 다른 형사법규 위반 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의식이 낮으며, 가출, 가정파탄,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범죄로 주로 피해자는 부인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내폭력 피해가정의 65.9%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동반되고 있음<sup>7)</sup>

□ **성평등 기대효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하여 사후접근에서 벗어나 초기 예방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상담이나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가족문제 해결 및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11년까지 실적	'12년	'13년 계획
가정폭력 예방활동 (캠페인/실시횟수)	2회	2회	4회

7)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절차 안내 범죄 유형별 안내서 일부 내용임

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남녀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방과후 보호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 사업기간 : 2012~2015 (5년간)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 총사업비 : 1,827백만원(국비 873백만원, 시·도비 954백만원)
- 사업내용 : 방과후 아동 돌봄(보호·교육) 서비스 제공  
토요운영 등을 통한 아동보호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및 선정사유

- 대상사업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기 타	
		행안부 지정사업	자체 추진사업
	○		

- 해당 사업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임

○ 선정사유 및 여건

- 남녀 아동들에게 평등한 보호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
- 주5일 수업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토요일운영 등에 저소득 아동들을 참여케 하여 맞벌이 및 여성 경제 활동에 도움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년도 당초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63	1,827	164	9.8%
<b>예산총계</b>	<b>1,663</b>	<b>1,827</b>	<b>164</b>	<b>%</b>
국고보조금	825	873	48	%
시·도비	838	954	116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계	-명	1,066명	1,127명
여성(비율)	명(%)	532명(50%)	572명(51%)
남성(비율)	명(%)	534명(50%)	555명(49%)

※ 통계출처 : 방과후 아동돌봄에 따른 시설이용아동 현황 보고

- 사업대상자의 경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계기로 대상자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2011년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였음

- 남아와 여아의 비율을 보면 여아의 비율이 2%p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비중은 여아의 비중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업수혜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명	1,066명	1,127명
여성(비율)	명(%)	532명(50%)	572명(51%)
남성(비율)	명(%)	536명(50%)	555명(49%)

- 남아와 여아의 이용 정도가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제공되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남아와 여아에 대한 수혜자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663	1,827
여성(비율)	(%)	832(50%)	914(50%)
남성(비율)	(%)	831(50%)	913(50%)

- 예산구분을 하면 남아와 여아를 대상으로 성별 격차를 드러내기 어려우며, 개별 센터에서 제공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집행 예산과 서로 다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 연구가 필요함

□ **성별격차 원인분석**

- 통계상 예산에서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보호나 예산에서의 차등은 없음
  - 다만, 성별 격차를 살펴본다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통합 프로그램 등의 분석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및 서비스에서 성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심층 분석을 할 계획임

□ **성평등 기대효과**

- 아동들을 안심하고 돌봄으로써 안전예방 및 아동 대상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 아동들에게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방과후 이용 아동수	1660명	1800명	2000명

## V. 성인지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성인지예산제도는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제시되었음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성인지예산시범작성을 통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제도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미흡하게 작성되었음
- 이를 토대로 현재 수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지니고 있음
  - 우선,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지표별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둘째, 성인지예산서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수준의 성별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여성담당자, 또는 부서에서 일괄 지정하면서 성인지예산서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서가 분석되고 있는 실정임
  - 셋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부서별 실국별 총괄부서 등 단계별로 성인지예산서의 목표가 연계되어야 하나 현재 개별 예산서로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넷째, 성인지예산서가 첨부서류로 제출되면서 성인지예산서 자체에 대한 분석의 신뢰가 낮은 상황임
  -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컨설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의 활용도가 매

우 낮은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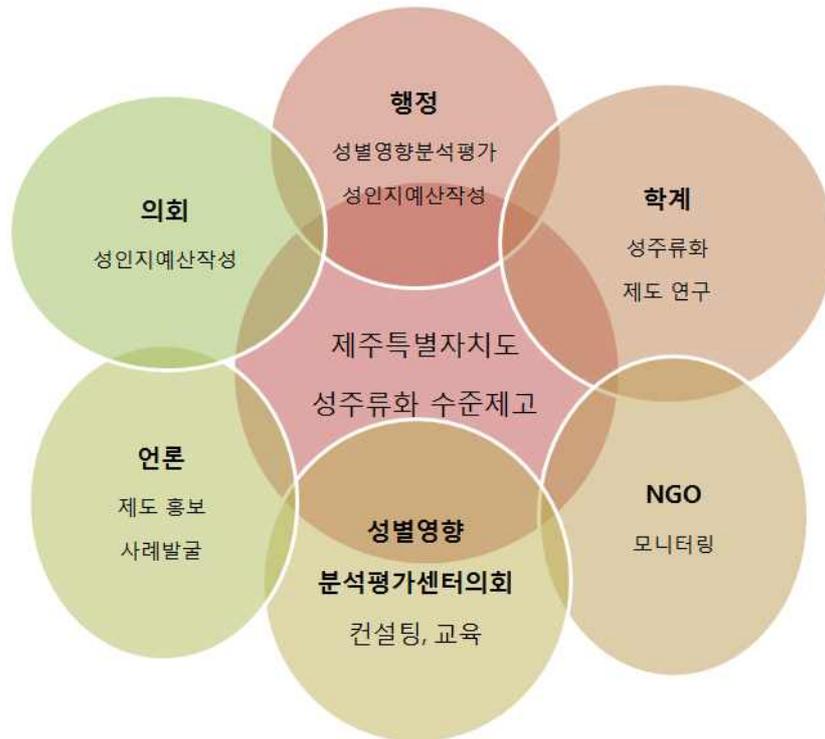
- 이러한 지역의 한계를 토대로 성인지예산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첫째, 성평등목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등 총괄 예산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표에서 실국 또는 사업 담당부서 수준의 총괄표를 작성함에 있어 지속적인 부서별, 실국별 협의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인지예산서 대상 과제 선정을 예산을 당초 수립하는 계획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함으로써 지역 내 성별격차가 큰 과제를 발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 수준의 성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지역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sup>8)</sup>를 적극 활용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함
- 사실 성인지예산서는 여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등 크게 3개 영역에서 과제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와 더불어 여성정책에 대한 과제 발굴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성인지예산서의 과제 발굴이 성별영향분석평가보다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2013회계연도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첨부서류의 성격을 띠면서

---

8)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는 2012년 4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물론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시행 첫해에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수준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함께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우수 사례를 발굴 제주지역의 성주류화를 정착 시키는 노력은 물론 학계, NGO, 언론, 의회 등 각 주체별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수준의 성주류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계 협력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0년도 대한민국재정」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
- 김경희(2007),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8),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외(2009),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 외(2009), 「성인지예산제도화 방안연구(III):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2), 2013 성인지예산서 지침
- 임성일(201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피로성과 정책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4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정영태(2010),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강경숙·허지영(2011), 「201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강창민·강경숙(2010),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주도(2005), 제주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05), 제주도 주요업무보고
- 제주발전연구원(201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_\_\_\_\_ (20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200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0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0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0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12),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시범)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조선주 외(2011),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국가 성인지예·결산서 분석·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한눈에 보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행정안전부(2012.7).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인터넷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http://likms.assembly.go.kr/bill)  
 서귀포시청 <http://www.seogwipo.go.kr>  
 제주발전연구원 <http://www.jdi.re.kr>  
 제주시청 <http://www.jejudo.go.kr>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http://www.jeju.go.kr)  
 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 시스템 <http://gsis.kwdi.re.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http://oneclick.law.go.kr> /CSP/CnpCls Main .laf? pop  
 Menu=ov&csmSeq=252&ccfNo=1&cciNo=1&cnpClsNo=1

## Abstract

### The basis for the analysis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research

Keyword : Gender budgeting system, Gender Budgeting, Gender analysis, Gender gap, Gender responsive budget, Women's Policy tool

Jung yungtae

Gender budgeting system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s reflected in budgeting and enforcement b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budget on women and men.

Gender Budgeting (gender responsive budget) is an overview of the budget associated with women and men separately selected Budgeting and GRB, scale and each of the business by gender expectations effect, performance objectives, beneficiary gender analysis, gender gap causes written budget report. Gender responsive closing accounts is one of the report about executive performance, effectiveness and gender equality assessment.

Background, gender budge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wake of a high-level conference in Brussels in 2001, is expanding worldwide in the 1995 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 and Women's Policy tool is one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Finance Act, our country, too, that results in budgeting, budget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men and women to reflect the need to raise as amended 2010 fiscal year from gender budget and settlement written to the National Assembly

was made.

Gender and settlement since the 2013 fiscal year, provincial statute as amended in 2011, while local governments were obliged to submit to the local council.

Budgeting Statement step Given that the regulations and to submit the documents attached to gender budget propulsion system gender budget submitted to Congres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are intended to provide examples that can take advantage of public officials. Planning was performed the initial case by providing a variety of effective institutions to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plan for one. 2013 Gender Budgeting for Gender Responsive Budgeting for study, research, review, and is intended to provide a guideline.

## 연구진

---

연구책임    정영태    전문연구원

---

기본연구 2012-00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

---

발행인    ||    양영오

발행일    ||    2012년 11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http://www.jdi.re.kr)

인쇄처    ||    00인쇄사

---

ISBN : 978-89-6010-282-8 933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